[서식 예]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(물상보증인의 변제)



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주식회사 ◇◇은행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대표이사 ◈◈◈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○○지방법원 ○○등기소 20 ○○. ○. 접수 제○○○○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○○. ○. ○.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데, 원고의 동생인 소외 ●●●가 피고은행으로부터 가계대출을 받고자 하여 피고의 담보제공 요구에 원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.
- 2. 그래서 원고는 20○○. ○. ○. 피고은행과 근저당권자 피고은행, 채무자 소외 ⑥⑥⑥, 근저당권설정자 원고, 채권최고액 ○○○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○. ○○지방법원 ○○등기소 20○○. ○. ○. 접수 제○○○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.

- 3. 그 뒤 소외 ◉◉◉는 피고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연체하였고, 피고은행은 항 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○○지방법원 20○○ 타경 제○○○호로 신청을 하여, 원고는 소외 ◉◉◉의 물상보증인으로서 20○○. ○. ○. 피담보채무액 ○○○원을 피고은행에 대위변제 하였습니다.
- 4. 그런데 피고은행은 소외 ●●●의 또 다른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저 당권을 말소해주지 않고 있으나, 이 사건 근저당권은 포괄근저당권이 아님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명백하므로 피고은행의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못한 것입니다.
- 5. 따라서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○○지방법원 ○○등기소 20○ ○. ○. ○. 접수 제○○○○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

1.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

1. 갑 제3호증 대위변제동의서

. 1 1044

1. 갑 제4호증 경매통지서

1. 갑 제5호증 완납증명원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

부동산의 표시

- 1.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-○○ 대 157.4m²
- 1. 위 지상
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주택
 1층 74.82m²
 2층 74.82m²
 지층 97.89m². 끝.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□☞소멸시효일람표 www.kgc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 용	・인지액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・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절차 및 기 간	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
- 2.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
- 3.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

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